

# 방송국 규정

제정 1995. 3. 1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정 2000. 2. 17.  
개정 2001. 9. 1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문개정 2013. 3. 1.  
개정 2013. 7. 1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개정 2017. 5. 23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교육방송국은 대경대학교 교육방송국 (호출부호 D.K.B.S)이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교육방송국은 대경인의 교양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며, 방송을 통하여 건전한 면학분 위기를 조성하고 대학문화발전을 선도하며, 신속, 정확,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양인, 지성인,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한다. <개정 2017.5.23.>

**제3조(위치)** 본 교육방송국은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규정의 준수)** 본 교육방송국은 한국방송심의위원회 규정 및 본 대학의 학칙을 준수한다.

## 제 2 장 조직 및 임원

**제5조(임원)** 1. 방송국장은 본 대학의 총장이 되며, 본 교육 방송국을 대표한다. <개정 2017.5.23.>

2. 방송주간은 총장이 기간을 정하여 따로 임명한다.

3. 방송주간은 방송업무 및 기술업무에 관하여 소속 학생국원을 직접지도 하고 감독한다. 또한 국원의 임명, 예산, 결산 및 기타 방송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집행한다.

4. 방송국장은 전문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직원 중에서 간사 및 지도교수를 임명하여 방송주간과 협의하여 일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**제6조(부서)** 본 교육방송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작부, 방송부, 보도부, 기술부를 두며 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7.1.>

1. 제작부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며, 매 학기마다 주간 방송 편성을 담당한다.

2. 방송부는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한다. <개정 2013.7.1.>

3. 보도부는 방송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취재를 담당한다.

4. 기술부는 방송기재의 관리, 설비, 수리 및 조정을 담당한다.

5. 삭제 <2013.7.1.>

6. 삭제 <2013.7.1.>

**제7조(학생임원)** 1. 본 교육방송국에는 다음과 같은 학생 임원을 둔다. 실무국장 1명, 보도부장 1명, 방송부장 1명, 기술부장 1명, 제작부장 1명 <개정 2013.7.1.>

2. 실무국장은 최고학년의 국원 중에서 방송주간의 추천으로 방송국장이 임명한다. 실무국장은 국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방송주간의 지시에 따라 교육방송국 활동의 실무를 총괄한다.

3. 각 부장은 실무국장의 건의에 따라 주간교수가 임명한 후 방송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각 부서는 부서의 제반업무의 진행처리에 부원들을 조정 지휘하며, 부서별 회의의 주재권을 갖는다.

## 제 3 장 국 원

**제8조(국원)** 본 교육방송국은 국원을 정규국원과 수습국원으로 구분한다.

**제9조(자격)** 1. 정규국원은 본교 학생 중 소정의 전형과 수습 기간을 거친 자로서 방송주간의 추천으로 방송국장이 임명한다.

2. 수습국원은 본교 1학년 신입생으로써 소정의 전형을 통하여 합격한자로 한다.

**제10조(선발)** 1. 본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중에서 본 교육방송국이 실시하는 소정의 면접전형에 의해서 수습국원을 선발한다. <개정 2017.5.23.>

2. 방송실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방송주간의 지시를 받아 특별 전형에 의해서 수습국원을 선발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자격상실)** 1. 국원 중 휴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원의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
2.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국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3. 국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재임될 수 없다.

**제12조(징계)** 주간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원을 제명할 수 있다. 단, 제명 시에는 실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실무국장의 징계는 주간의 제청으로 방송국장이 이를 행한다.

1. 교육방송국 국원으로서 품위유지가 되지 않는 자

2. 무단으로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경우

3. 교육방송국 내에서 불화를 주동하거나 동조한 자

4. 교육방송국 내의 물품을 무단으로 방출하거나 사용한 자

5. 방송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자

6. 그 외 사항은 방송주간과 실무국장, 부장이 결정한다.

[전문개정 2017.5.23.]

**제13조(국원회의)** 국원회의는 정기국원회의와 임시국원회의가 있다.

1. 정기국원회의는 매년 1학기말 실무국장이 소집하여 사업보고, 결산보고, 사업계획에 관한 토의를 한다.
2. 임시 국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실무국장이 소집하며 기능은 정기국원회의 때와 같다.
3. 국원회의는 국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 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## 제 4 장 운영 위원회

**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)**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방송주간이 되며, 위원은 교원 중에서 방송주간의 추천에 의해,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15조(운영위원회 임무와 기능)** 운영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교육방송국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국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교육방송국의 운영 및 국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방송국의 전반에 관한 사항

## 제 5 장 방 송

**제16조(방송프로)** 매주 방송시간 및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주간 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**제17조(방송원고)** 방송원고는 사전에 작성하고, 실무국장을 경유하여 방송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방송한다.

## 제 6 장 재 정

**제18조(재정)** 방송국의 경비는 본 대학 학생이 납부한 소정의 방송비와 기타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교육방송국 국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이나 미비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